

排出 賦課金 制度

鄭 國 鉉

〈環境廳 振興協力課長〉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과금은 오염물질 별로 정하게 되며 그 금액의 산정은 다음 방법으로 계산한다.

○ 아황산가스, 불소화합물, 분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및 특정유해 물질은,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배출허용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로 계산하며, 악취는 배출물질 1,000 m³당 부과금액×배출물질량×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로 계산한다.

〔배출업소 상황〕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연소시설로서 아황산 가스의 배출농도가 2,000ppm, 일일 유량이 20,000 m³, 배출기간이 90일(1984년도)일 경우의 부과금?

〈계 산〉

1) 오염물질(연소시설의 SO₂) 1kg당 부과금액 : 500 원

2)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배출기간= 11 kg×90 = 990 kg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 오염물질 배출량= 일일 유량×배출허용기준 초과 농도×10⁻⁶ × $\frac{64}{22.4}$ = 20,000 S m³×200ppm×10⁻⁶ × $\frac{64}{22.4}$

$$= 11.42857 \dots \text{ kg}$$

$$= 11 \text{ kg}$$

배출기간= 90 일

3)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2,000 - 1,800) \text{ ppm} \div 1,800 \text{ ppm} \times 100$$

$$= 11.11 \% = 1$$

아황산 가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미만일 경우에는 1, 20%이상 40% 미만일 경우에는 1.3, 40%이상 80%미만시 1.6,

80%이상 101%미만시 1.9, 100%이상 200%미만시 2.5, 200%이상 300%미만시 3.5, 300%이상 400%미만시 4.5로서 초과율이 높을수록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초과율이 400%이상일 경우에는 조업정지에 해당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1.5(Ⅲ지역) 대기오염물질의 경우 I, II, III지역으로 구분되며 I지역은 취락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말하며 지역별 부과계수는 2이다. II지역이란 공업지역, 수산자원 보전지역, 개발촉진지역, 유보지역을 말하고 부과계수는 1이며 III지역은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녹지지역을 말하며 지역별 부과계수는 1.5이다.

5)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1.2(84년도)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부과금 시행년도인 1983년도를 $\frac{100}{100}$ 으로 하고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에 $\frac{120}{100}$ 을 곱한 것으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1984년도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는 1.2가 되며 1985년의 산정지수는 1.44가 된다.

따라서 부과금액은 500 원×990 kg×1×1.5×1.2 = 891,000 원이 된다.

이와 같이 배출부과금은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악취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물질 1,000 m³당 부과금액 등은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개선기간이 1984년도와 1985년도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적용은 1984년도의 산정지수인 1.2를 전개선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84년도의 개선기간에는 1.2를 적용하고 85년도의 개선기간에는 1.44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